

제 23 조 이용료 등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각종 이용료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관리 및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료로서 투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부과하는 투자서비스 이용료, 투자완료 수수료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부과하는 대출금모집 수수료,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여신업체”가 부과하는 “이용료”, “기업 용자 서비스 이용료”로 구분됩니다.

3.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회원”이 “사이트”를 통해 참가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참가계약이 확정되어 체결된 경우 “회사”의 투자 및 대출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수로서 “회원”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회원의 등급 및 투자금액 혹은 대출금액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서비스 이용료

· 원리금 상환시 [원금 및 이자 상환]

대출회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하며, 공제된 잔액에서 해당 상환의 직전 투자금 잔액의 월 최대 0.17%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회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상환 및 연체가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 거치기간시 [이자만 상환]

대출회원의 이자가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공제하며, 세액이 공제된 세후이자소득의 최대 15%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남은 잔액을 투자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단, 중도상환 및 연체가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2) 투자완료 수수료

투자회원이 “사이트”를 통해 원리금수취권 참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참가계약에 기반하여 첫 대출원리금을 상환받는 시점에 최초 투자금액의 최대 0.5%를 서비스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회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수수료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4. “여신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1) 개인 용자 서비스 이용료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서비스”를 통해 용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출회원은 “여신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업체”는 해당 수수료 최대 3.0%를 제하고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용자 서비스 이용료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서비스”를 통해 용자가 성사되었을 경우, 대출회원은 “여신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로 서비스 편의를 위해 “여신업체”는 해당 수수료 최대 5%를 제하고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연체기간이 120 일 초과인 건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은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에 투자한 투자회원의 동의 없이 “여신업체”의 재량으로 감액 또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재량 내에서 이용료의 추가, 폐지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25 조 채권의 매각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의 연체일이 120 일을 초과할 경우 여신회사는 해당 채권을 신용회복기금 혹은 “여신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투자자의 동의없이” 매각할 수 있으나, 여신회사는 매각가액이 최대한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하여야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7 년 4 월 19 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6 년 7 월 28 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